국공립 중·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별법안

(전현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330

발의연월일 : 2026. 4. 14.

발 의 자 : 전현희·박해철·서영석
이수진·박홍배·김주영
추미애·송재봉·박균택
박정현 의원(10인)

제안이유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은 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육 및 행정업무 등을 지원 또는 보조하기 위한 근로를 제공하고 일반회계가 아닌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받는 직원으로서 학교에서 행정실장 등 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며 학교의 행정·회계·인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국공립 중·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은 학교 행정실에서 공무원과 같이 장기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8급 또는 9급 공무원의 보수를 기준으로 호봉승급에 상한이 있고, 승진 기회도 제한되어 있어 급여 및 승진에서 공무원과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

이에 국공립 중·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함으로써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하여 학교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공립 중·고등학교의 행정실에 근무하는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서류 및 면접시험 등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함(안 제5조).

라.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종전 근무경력을 승진 및 호봉 획정 등에 필요한 근무 경력으로 인정하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법률 제 호

국공립 중·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공립 중·고등학교에서 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보조하는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공립 중·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학교 중 같은 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를 말한다.
2.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이란 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육 및 행정업무 등을 지원 또는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근로를 제공하고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른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받는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국공립 중·고등학교의 직원(퇴직한 직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1970년 1월 1일 이후 학교 육성회직원으로 채용한 사람

   나. 1998년 1월 1일 이후 학교 학부모회직원으로 채용한 사람

   다. 2000년 1월 1일 이후 학교회계직원으로 채용한 사람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추진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임용에 따른 호봉·연금 산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례)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호봉제 학교회계직원 중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서류 심사 및 면접시험 등 공무원 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절차를 거쳐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그 임용자의 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공무원 임용의 절차, 방법, 시기 및 인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호봉제 학교회계직원 근무 경력 인정에 관한 특례) ① 공무원 경력 인정에 관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종전 근무경력은 승진 및 호봉 획정 등에 필요한 근무 경력으로 인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정하는 경력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재직기간의 산입에 관한 특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경력을 인

정받은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은 해당 기간을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경력이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사람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 기여금을 내야 한다.

②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 산입의 방법, 신청 절차 및 퇴직급여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